

중국 시큐리티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공안과 보안서비스를 중심으로

중국 시큐리티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공안과 보안서비스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목 차

I. 서 론

II. 중국 시큐리티제도의 전개

1. 사회주의 개조기
2. 사회주의 건설기
3. 문화대혁명기
4. 사회주의 현대화기
5. 개혁·개방의 심화기

III. 개혁·개방기 공안제도의 정비

1. 공안제도의 개편과 공안기관의 범주
2. 공안관련 조직체계와 임무

IV. 개혁·개방기 보안서비스와 제도의 발전

1. 보안서비스 산업의 발전
2. 보안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운용
3. 보안서비스 법제의 정비: 보안조례

V. 결 론

참고문헌

1. 서론

중국의 공안은 1949년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문화대혁명과 사회주의 현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사회적 변동 속에 법제와 조직 등 제도의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보안서비스 산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큐리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는 보안서비스 산업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요청하게 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WTO에 가입에 따라 보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단계에 있었던 바, 중국 정부는 산재한 보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 법규를 마련하는 견지에서 2009년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중국 시큐리티제도의 전개과정, 특히 최근의 공안과 보안서비스제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 시큐리티제도의 발전과정이 보여주는 의의를 추출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¹⁾

본 연구는 시큐리티와 관련된 제도의 발전과정 고찰을 위하여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적 시각과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에 의해 진행하고자 한다. 제도에 대한 개념규정은 제도주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스(D. C. North)와 같이 제도를 “인간 상호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제약조건”으로 넓게 보아 비공식적 제약(informal constraints)들까지 제도로 파악하는 견해보다는²⁾ 오스트롬

1) 본 연구는 중국 시큐리티제도 자체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 시큐리티제도와 비교 연구, 나아가 우리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중국 시큐리티제도 및 시큐리티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정 응, “중국의 시큐리티제도와 동향”,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제1회 시큐리티포럼, 2007. 8. 23(안황권 외, 비교시큐리티제도론, 도서출판 진영사, 2007년 개제출판); 정 응, “중국 시큐리티산업의 발전과 현안과제(中國安全產業的發展和疑案課題)”, 中-韓學術交流與建立友好關係論文集, 中國延邊大學·韓國龍仁大學, 2008. 6. 27일 게재 논문 등이 있다.

2) 노스는 역사적 안목 하에 제도 개념을 비교적 넓게 정의하여,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인위적 제약을 제도로 파악한다. 따라서 노스의 제도 개념 범주에는 법·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약(formal constraints) 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행동양식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

(E. Ostrom)의 경우처럼 제도를 법규와 같이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다룰 제도의 범주는 법규와 그에 근거한 조직과 운용체계 등의 전개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informal constraints)들도 포괄된다. North,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4.

II. 중국 시큐리티제도의 전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정부 공안을 포함한 중국 시큐리티제도의 발전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회주의 개조기(1949-1956)

중국은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통일전선조직인 이른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약칭 人民政協)의 제1기 전체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인민정협은 이 회의에서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행하여 임시헌법적 성격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 이하 정협공동강령)을 통과시키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조직법(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組織法) 및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조직법(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組織法, 이하 중국정부조직법)을 제정하였다.³⁾

이 법제들 중에서 당시의 공안제도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정부조직법에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국가정무의 최고집행기관인 정무원을 조직하도록 하고(제5조), 다시 정무원에 각 국가행정업무를 담당할 部、會、院、署、行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바(제18조), 여기에 내무부(內務部), 외교부(外交部), 정보총서(情報總署)에 이어 4번째로 공안부(公安部)가 설치되는 것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동법 제18조는 공안부가 정무원 내의 정치법률위원회로부터 업무지도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⁴⁾ 중

3) 인민정협은 제1기 전체회의에서 정협 공동강령과 조직법, 정부조직법 등 중국의 국가 근간이 되는 3개의 역사적 문건을 통과시킨 것 외에도, 국호(中華人民共和國), 수도(北平, 1949. 9. 27일 北京으로 개명), 연호(西紀), 국가(義勇軍進行曲), 국기(五星紅旗) 등에 관한 결의사항을 통과시켰다. 中國網,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http://big5.china.com.cn/aboutchina/txt/2007-08/19/content_8709736.htm (2010. 9. 10 검색); 人民網, “1949年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第一屆全體會議召開 通過《共同綱領》”, <http://60.people.com.cn/BIG5/166974/9983735.html>(2010. 9. 10 검색).

국정부조직법에 기초한 이러한公安부의 설치 규정이 중국公安기관의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1949년 10월 15일 당과 정부의 배려 하에 베이징에서 제1차 전국公安회의를 소집하여公安기관간의 상하 통일적 명령체계를 수립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안배하였다. 또한 동년 10월 19일 중앙인민정부는 뤼웨이칭(羅瑞卿)을公安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어 11월 5일公安부는 베이징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으로 출범하였다.⁵⁾

정무원公安부의 내부 조직으로는 정치보위국(政治保衛局), 경제보위국(經濟保衛局), 치안행정국(治安行政局), 무장보위국(武裝保衛局), 판공청(辦公廳), 인사사(人事司),公安부대(公安部隊)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에는省級에公安청,縣級에公安사 등을 설치하였다.⁶⁾

한편 정협공동강령에는 제10조 중국 무장역량의 범주 속에 인민공안부대 및 인민경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곧 인민해방군, 인민공안부대 및 인민경찰로서 이는 인민의 무력에 속한다. 그 임무는 중국의 독립과 영토, 주권을 보전하며, 중국인민의 혁명 성과와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당시의 지휘체계는 정협공동강령에 의거하여, 인민공안부대는 자기의 무장력을 가진 부대로서 인민해방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지도 아래 있는데公安업무는公安부가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이 인민공안부대의 조직은 중앙의公安부대 외에, 각 성에公安총대, 현에公安대대가 설치되어 각각公安기관에 속해 있었다.

중국은 1954년 9월 헌법제정과 더불어公安부대를公安군으로 개칭하여 인민해방군의 일종으로 만들었다. 다음 해 1955년 2월 8일에는 인민

4) 정치법률위원회는 정무원 내에 설치된 조직으로서公安부 외에도 내무부, 사법부(司法部), 법제위원회, 민족사무위원회(民族事務委員會) 등에 대한 업무를 지도한다(중국정부조직법 제 18조).

5)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백산출판사, 2006, 449-450면.

6)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2003, 450면.

7) 維基文庫,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 <http://zh.wikisource.org>(2010. 9. 10 검색).

해방군 군관복무조례, 7월 30일에는 병역법을 공포하고 지구·현 단위 공안부대를 인민무장경찰로 개편하였다. 이것은 종래 지구·현 공안부대가 담당하고 있던 임무를 인민경찰의 담당으로 옮기고 각급 공안기구에 편성한 것이다.⁸⁾

건국 초기 중국은 공산당 주도하 인민정권의 확립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요청되고 있었던 바, 이를 위해 중국공안은 공안부의 출범과 공안부대(무장경찰) 조직을 정비하면서 이른바 반혁명세력을 척결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⁹⁾

2. 사회주의 건설기(1957-1965년)

1957년 6월 25일 제76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경찰조례(中華人民共和國人民警察條例, 이하 인민경찰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공안기관의 성격·임무·직책·권한, 인민경찰 임용조건과 상벌제도 등 공안조직과 인사를 제도화하였다.¹⁰⁾ 인민경찰조례 제1조는 인민경찰을 인민민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수단인 하나이며, 무장성격을 가진 국가치안행정역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건국 후 중국인민경찰의 제1차 입법조치였으며 중국공안제도 건설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8) 김성수, 앞의 책, 451면.

9) 건국 직후 중국은 국민당세력과 제국주의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었고, 이러한 반혁명세력들의 척결이 당면 핵심과제였다. 당시 약 200만의 국민당 무장세력이 각지에 존재·활동하고 있었으며, 기타 공산당 반대세력과 특수목적의 세력이 120만에 이르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정권확립을 위해 인민정협강령의 제7조 반혁명활동세력진압규정을 두어 공안으로 하여금 이들 세력을 척결하도록 하였다. 또 중국공안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강도·절도·매춘·도박·아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시기 중국공안은 약 3만 명의 강도범, 3만 6천명의 아편흡연자를 체포하였고, 각종기원·매춘장·도박장을 폐쇄시켰으며, 유랑자들을 노동생산교양소에 수용시켰다. 박동균·이재호, “중국 인민경찰의 발전과정과 조직관리”, 치안정책연구 제17호, 2003, 228면.

10) 인민경찰조례는 장 구분없이 총11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維基文庫, “中華人民共和國人民警察條例”, <http://zh.wikisource.org/zh-hant/%E4%B8%AD%E5%8D%8E%E4%BA%BA%E6%B0%91%E5%85%B1%E5%92%8C%E5%9B%BD%E4%BA%BA%E6%B0%91%E8%AD%A6%E5%AF%9F%E6%9D%A1%E4%BE%8B>(2010. 9. 10 검색).

1958년 6월 9일에는 공안기관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제9차 전국공안회의를 소집하여 수사·소방·경제·문화·교통 등 업무를 새로이 확대하였다. 동시에 공안원의 조직관념·기율관념·법제관념 및 실사구시관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안원들의 사상행동 준칙을 규정한 공안인원 8대기율·10항주의(公安人員8大紀律10項注意)를 제정하였다.¹¹⁾

이 시기 공안기관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 및 기타범죄에 대한 지속적 대응, 치안 및 재해사고 관리체계 구축, 인민생활안정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¹²⁾

사회주의 개조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유경제, 집단경제, 국가-민간 혼합경제의 비중이 1952년 21.3%에서 1956년 92.9%로 높아졌으며, 각 부문의 경제행위는 통일된 국가계획으로 통제되었다.¹³⁾ 이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체제이행작업이 완수되고 대규모의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로 접어들었다.

3. 문화대혁명기(1966-1976)

중국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국가질서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즉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지세력과 기술관료층을 중시하는 덩샤오핑(鄧小平) 세력 간의 권력투쟁 속에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의 기본체제들이 붕괴되었고 공안 역시 극좌 사회주의 대중운동에 매몰되어 치안유지와 민생안정이라는 정상적 임

11)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백산출판사, 2006, 449-450면.

12) 인민공사제를 통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확립은 지주세력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허난(河南), 안웨이(安徽) 성 등 11개 성에서 각종 항의·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지방의 경우 각종 무장세력들이 잔존하였고, 유랑민에 의한 부녀자 매매와 강간, 각종 절도와 강도사건이 빈발하였다. 또한 경제건설에 따라 화재, 폭발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가 점증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59년부터 1961년 사이 지속적 가뭄과 인민공사제로 인한 생산력 하락으로 중국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되었다. 박동균·이재호, 앞의 글, 229면.

13) 임반석, 중국경제, 도서출판 해남, 1999, 64면.

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모택동은 1967년 1월 13일 공안기관을 문화대혁명을 추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하는 이른바 ‘공안6조’를 반포하였다.¹⁴⁾ 린바오(林彪), 장칭(江青)의 문화혁명 주도세력은 “잡란공검법(砸爛公檢法, 공안·검찰·법원의 파괴)”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안기관의 조직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정치적으로 공안기관은 “자산계급의 도구”, “국민당간첩기관” 등으로 매도되었으며, 조직측면에서 전국 공안기관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철저히 바뀌었다. 1967년 12월 중공중앙이 공안기관에 대하여 군에 의한 통제를(軍事管制) 결정한 후, 경찰고위간부들이 우파로 몰려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또 공안부소속의 6개 인민경찰학교도 폐교 또는 휴교조치가 이뤄졌다.

군사관제 실시와 공안조직 폐지 의도는 反모택동세력을 숙청하고 문화대혁명을 추진하려는데 있었지만, 1969년에 이르러 모택동은 문화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점차 공안제도와 업무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였다. 1970년 12월 제15차 전국공안회의가 개최되었고, 린바오의 모반사건 이후 공안기관은 조직을 부활시키며 공안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켰다.¹⁵⁾ 또한 1975년 제4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여러 공안기관에 검찰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진 헌법개정안이 채택되어 공안기관의 권력이 확대되었다.

4. 사회주의 현대화기(1977-1991)

모택동 사망(1976. 9. 9) 이후 1977년 7월 복권된 등소평은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4개 현대화노선을 채택하고 개혁·개방을 강조하였다. 등소

14) 김형만 외,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7, 193면.

15) 박동균·이재호, 앞의 글, 230면.

평은 문화대혁명으로 훼손된 제도들의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공안부의 업무도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공안기관 역시도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강조하였다.

공안기관의 개혁·개방은 조직 개혁과 대외협력 강화로 나타났다. 첫째, 1982년 당 중앙은 중국인민해방군 내위부대를 공안부에서 분리시켜 공안기구 병역제 경찰과 합병하여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를 창설하였다. 둘째, 1983년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를 창설하여 공안기관의 대외정보와 대간첩업무를 국가안전부로 이관시켰으며, 공안기관의 노동교화·노동교양 관리사업을 사법부로 분리시키는 등 공안체계의 대개혁을 추진하였다. 셋째, 1984년 중국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대외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즉 1984년에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제53회 총회에서 ICPO의 정식가맹국으로 가입하여 공안부 형사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 중국사무국을 조직하였다. 또, 출입국수속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외국여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속절차를 단순화하였다.¹⁶⁾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안관계 법제를 보면 먼저 당의 개혁·개방노선을 뒷받침한 1982년 12월 헌법 제29조에 경찰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 건설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병역법(1984. 10), 외국인출입국관리법(1985. 11), 도로교통관리조례(1988. 3), 국가비밀보호유지법(1989. 5), 집회행진시위법(1989. 10) 등을 제정하여 경찰에 관한 법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시큐리티산업 측면에서 주목할 것은 이 시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국가공안조직과 별도로 최초의 보안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추진 속에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에 수반된 시큐리티 수요의 증가에 따라 1984년 경제특구 중의 하나인 선전(深圳)에서 첫 보안회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1986년 4월에는 수도 베이징에

16) 정진환, 앞의 글, 451면; 박동균·이재호, 앞의 글, 231면.

서 보안서비스총공사(北京市保安服務總公司)가 설립되었다.

5. 개혁·개방의 심화기(1992-)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혼란이 마무리되고, 1992년부터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천명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되어 온 시기이다. 1992년 7월 1일에는 인민경찰의 조직기율 제고와 효과적인 지휘관리를 위하여 경찰직함(경함)제도를 실시하였다.¹⁷⁾ 또 국가안전과 사회치안질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순조롭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1995년 2월 28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中華人民共和國人民警察法, 이하 인민경찰법)을 통과시켜 경찰의 임무·직권·의무·기율·조직관리·경무·집행감독·법률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동법은 상무위 통과와 함께 주석령 제40호로 공포·시행되었으며, 195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인민경찰조례는 인민경찰법의 시행과 동시에 같은 날 폐지되었다(인민경찰법 제52조).

인민경찰법 1957의 인민경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중국경찰은 새로운 시기에 국가안전과 사회치안 유지에 긴요한 법제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이어서 1996년 10월 1일에는 총기관리법, 1998년 9월 1일에는 소방법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하고, 2004년 4월에는 신헌법 4차 개정을 통해 사유재산의 불가침을 선언하는 등 개혁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개혁개방이 가져오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17) 중국의 경함제도는 1992년 7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中華人民共和國人民警察警銜條例》가 통과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법(2004. 5. 1), 치안관리처벌법(2006. 3. 1), 여권법(2007. 1. 1), 자금세탁방지법(2007. 1. 1)을 시행함으로써 경찰이 국내 교통과 치안관리 업무, 출입국절차 업무, 돈세탁(Money Laundering) 방지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민경찰법에 근거한 공안기관조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안기관의 설치 및 편제와 예산, 경찰의 직무 및 인사와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들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국가경찰조직에 의한 공적 치안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시큐리티산업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2005년 9월 현재 중국 공안기관이 설립한 보안서비스회사만 총 2,169개, 종사자수는 100만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공안기관 감독 하에 있는 보안과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안 부문 종사자 300만명을 포함하면 보안서비스업 종사자수는 총 400만명에 이른다. 특히 광둥성과 베이징시 등 경제발전 지역의 전문보안원 수는 각각 13만 5천명, 7만 6천명에 달하여 해당 지역의 경찰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공안기관이 설립한 보안서비스회사는 2,258개, 종사자수는 103만명으로 더욱 증가하였고, 나아가 2006년 상반기까지 보안서비스업 종사자수는 110만명에 달하여 2005년에 비해 10%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시큐리티산업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¹⁸⁾ 현재 중국은 산업화와 함께 보안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유치됨으로써 시큐리티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WTO에 가입에 따라 국내 보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준비해야 할 단계에 있었던 바, 중국 정부는 보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2009년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안서

18) 中國中央政府門戶網站, 『公安部通報“2006年北京國際保安研討會”情況』, 2006. 8. 15(중국 공안부 치안관리국 부국장 마웨이(馬維亞)의 공식기자회견 발표자료). <http://www.gov.cn>(2007. 7. 10 검색).

비스 기본 법제를 제정하면서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III. 개혁 · 개방기公安제도의 정비

1.公安제도의 개편과公安기관의 범주

가.公安 및 인민경찰의 개념과 제도 개편

중국의公安(公安, public security)이라는 용어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통상 ‘사회 전체의 치안’이라는 또는公安기관에서 일하는 경찰의 뜻으로 쓰인다.¹⁹⁾ 또한 중국에서는公安이라는 용어 외에 인민경찰(人民警察, 약칭 民警)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범규상으로는 인민경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公安부 등公安기관의 인민경찰은公安민경(公安民警) 혹은公安간경(公安干警,公安기관의 간부와 경찰원)으로 약칭되기도 한다.²⁰⁾

중국公安과 인민경찰의 개념 범주와 관련하여 법제를 중심으로公安제도의 개편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57년 제정되어 인민경찰의 성격과 임무 · 권한, 인민경찰의 임용조건 등 규정함으로써公安조직과 인사를 제도화한 인민경찰조례에서는 인민경찰기관이公安기관(公安부 및 각급 지방공안기관)과 개념상 완전히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민경찰은 단지公安기관의 인민경찰만을 의미했다.²¹⁾

그러나 정부조직상 1983년公安부에서 국가안전부가 분리되고,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조직법에 의해 사법경찰을 두게 되면서 인민경찰의

19) Daum 중국어사전, “公安”, <http://cndic.daum.net/word.html?search=yes&lang=cn&q=%E5%85%AC%E5%AE%89&number=41494>(2010. 9. 10 검색); 중국의 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도 公安을 “사회치안(社會治安)”, 또는公安기관의 직원(公安機關的工作人員)으로 정의하고 있다. <http://www.nciku.cn/search/cc/detail/%E5%85%AC%E5%AE%89/40908>(2010. 9. 10 검색).

20) 維基百科, “人民警察”, <http://zh.wikipedia.org/zh/%E4%BA%BA%E6%B0%91%E8%AD%A6%E5%AF%9F>(2010. 9. 10 검색).

21) 인민경찰조례 제4조. “人民警察受中華人民共和國公安部和地方各級公安機關的領導。人民警察的編製和管理機構，由國務院另行規定”.

범위가 공안기관 뿐만 아니라 공안부문과 관련된 부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제도개편에 따라 인민경찰(기관)의 범주는 공안(기관)과 불일치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1995년 2월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민경찰법에는 이 같은 제도개편을 반영한 인민경찰의 범주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에서 인민경찰법상 규정되어 있는 인민경찰의 범주에는,

- ① 공안기관 즉 공안부 등에 소속된 인민경찰
- ② 국가안전기관 즉 국가안전부에 소속된 인민경찰이 우선 포함된다.
그외 사법행정기관의 인민경찰로서,
- ③ 감옥의 인민경찰
- ④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명칭은 사법경찰(司法警察)이지만,
- ⑤ 인민법원의 사법경찰,
- ⑥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이 인민경찰에 포함된다.²²⁾

나. 공안기관의 범주와 임무

공안이라는 용어를 ‘사회치안’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공안기관은 사회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안기관의 의미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쓰게 되면 그 범주에는 공안부 외에도 국가안전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의 인민경찰이 소속된 국가기관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공안기관(公安機關, public security agency)의 의미는 인민경찰법에 보듯이 좁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그 범주는 국무원의 공안부를 주축으로 하여, 철도·교통·민항·임업·해관의 전문공안기관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공

22) 인민경찰법 제2조. “人民警察包括公安機關、國家安全機關、監獄、勞動教養管理機關的人民警察和人民法院、人民檢察院的司法警察”.

안기관 등에 한정된다.

중국 공안부는 인민경찰법에 의거하여 공안기관의 임무로서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²³⁾

- ① 범죄행위의 예방 및 억제, 수사.
- ② 테러활동의 예방과 타격.
- ③ 사회질서의 유지, 사회치안질서 위해행위의 통제.
- ④ 교통·소방·위험물의 관리.
- ⑤ 호구·거민신분증·국적·출입국의 관리, 외국인의 중국내 체류와 여행 관련 업무의 관리.
- ⑥ 국경지역 치안질서의 유지.
- ⑦ 국가주요인사의 경호, 중요 장소와 시설물의 경비.
- ⑧ 집회시위활동의 관리.
- ⑨ 공공정보망 안전감찰사업의 관리감독.
- ⑩ 국가기관·사회단체·기업의 치안보위업무(security work)의 지도, 치안보위위원회(治安保衛委員會) 등 지역사회 치안보위조직(communitary security commissions)의 치안방법업무 지도.

위의 직무 내용에서 보듯이 중국 공안기관은 범죄통제와 사회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화재예방과 출입국관리 등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공안부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대외개방의 심화, 공안기능의 확대에 따라, 공안기관으로서 상기 업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주요 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 공안정책연구, 유관법률초안 기초, 전국공안사업의 지도감독
- 공안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공안통신기술사업의 기획, 공안장비·경비 등 경무표준제도 제정
- 외국 및 국제형사경찰기구,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경찰

23) 인민경찰법 제6조; 中國公安部, “概況信息”, <http://www.mps.gov.cn>(2007. 7. 10 검색).

등과의 교류협력

■公安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방침 제정,公安직원 감독관리규정 제정,公安기관감찰업무 지도,公安직원 기율위반사건의 조사·감독.

이처럼 중국公安부는公安업무에 있어 중추적인 중앙公安기관으로서 정책, 법안기초(起草),公安기관 지도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과학기술·통신기술의 발달과 개방 확대에 따라公安통신기술·장비도입 및 표준업무, 국제교류업무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公安기관의 인력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公安기관 소속 인민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조되고 이와 함께 탈법위험에 대비한 감찰업무와 비위조사업무가 주요 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2.公安관련 조직체계와 임무

중국의公安관련 조직에는公安부와 전문公安기관, 지방公安기관 등公安기관 외에 인민경찰이 소속되어公安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안전부, 사법부 등이 있다. 그리고 인민경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민경찰법 부칙에서 규정한 인민무장경찰부대를公安관련 조직체계에 포함할 수 있다,

가.公安부(公安部,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公安부는 국무원 소속으로 전국의公安업무를 주관하는 중앙公安기관이다.公安부는 2010년 10월 현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각 부서들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²⁴⁾

■ 관공청(辦公廳, Department of General Office)

24) 中國公安部, “概況信息”, <http://www.mps.gov.cn/n16/n1282/n3463/index.html>(2010. 10. 10 검색); 중국정부 영문 웹사이트(<http://english.gov.cn>) 중公安부 소개코너 참조.

- 경무감찰국(警務督察局, Department of Supervision)
- 인사훈련국(人事訓練局, Department of Personnel & Training)
- 홍보국(宣傳局,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 경제범죄수사국(經濟犯罪偵查局, Department of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 치안관리국(治安管理局, Department of Public Order Administration)
- 변방관리국(邊防管理局, Department of Border Control)
- 형사수사국(刑事偵查局, Depart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 출입경관리국(出入境管理局, Department of Exit & Entry Administration)
- 소방국(消防局, Department of Fire Control)
- 경호국(警衛局, Department of Security Protection)
- 공공정보망안전감찰국(公共信息網絡安全監察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Network Security Supervision)
- 유치장관리국(監所管理局, Department of Penitentiary Administration)
- 교통관리국(交通管理局, Department of Traffic Control)
- 법제국(法制局, Department of Legal Affairs)
- 외사국(國際合作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²⁵⁾
- 장비재무국(裝備財務局, Department of Logistics and Finance)
- 마약단속국(禁毒局, Department of Drug Control)
- 과학기술국(科技局, 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
- 대테러국(反恐怖局, Department of Counter-Terrorism)
- 정보통신국(信息通信局, Department of Info-communications)

공안부 각 부서의 주요 업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판공청은 공안에 관한 업무를 종합해서 공안부장이 방침·정책·법규 등을 제정할 때 의견을 개진한다.
- 경제범죄수사국은 전국의 경제범죄 정보수집, 수사활동을 담당한다.
- 치안관리국은 호적관리, 외국인 거주자 관리, 도시의 무단 유입자

25) 國際合作局은 중전의 外事局이 개칭된 것이다.

관리, 검찰기관이 실시하는 형사사건 처리의 협력, 주민등록증의 제작·발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보안서비스회사와 보안협회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보안업 주관 부서이다.

■ 변방관리국은 국경수비, 외국으로의 도망 및 불법출입국에 대한 감시와 방지업무를 담당한다.

■ 형사수사국은 전국의 범죄정보수집, 수사활동의 지도 및 주요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인터폴(ICPO)과 관련된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

■ 출입경관리국은 중국 국민 및 외국인의 사적인 출입국 및 일반여권을 소지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체류·여행 등의 관리사무를 지도한다.

■ 소방국은 소방법규의 제정·개정, 소방기재의 제작감시, 소방의 안전검사 및 소방활동을 지도한다.

■ 경호국은 내외 요인 특히 외국요인의 경호를 담당한다.

■ 공공정보망안전감찰국은 정보통신네트워크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담당한다.

■ 교통관리국은 전국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선전교육활동의 지도와 교통안전의 연구를 수행한다.

■ 법제국은 경찰업무관련 법규의 연구·제정·개정 및 경찰기관의 법령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 외사국은 각국 경찰기관과의 교류,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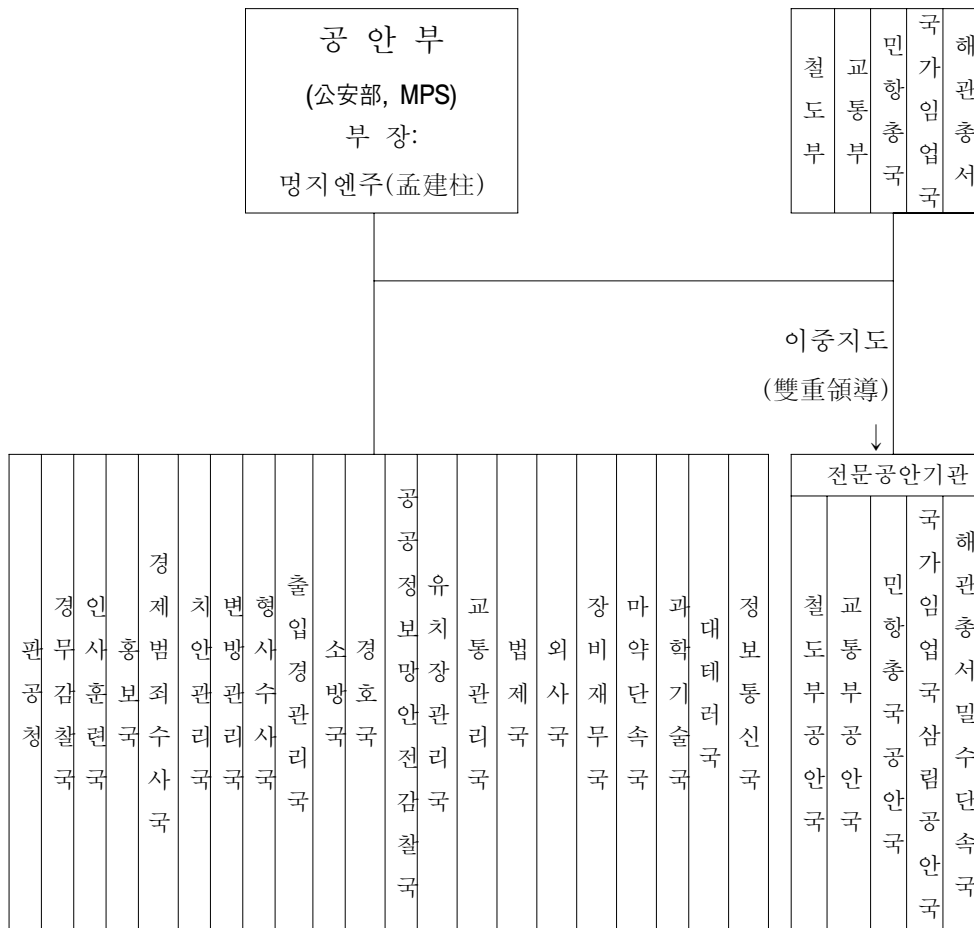
■ 장비재무국은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과 경찰장비의 운영 보급 및 지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운영을 담당한다.

■ 마약단속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지도업무를 수행한다.

■ 과학기술국은 공안과학기술기구를 관리하고 장비의 현대화 추진업무를 기획·지도한다.²⁶⁾

■ 그 밖에 경무감찰국과 인사훈련국은 과거 감찰국, 인사국, 교육국 등으로부터 직제가 조정된 것으로 보이며, 유치장관리국은 과거 예심국(豫審局)의 유치장관리와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대테러국은 과거 행동기술국(行動技術局)의 테러범죄 진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공안기관 조직도



자료:中國公安部, “概況信息”, <http://www.mps.gov.cn/n16/n1282/n3463/index.html>(2010. 10. 10 검색)

26) 정진환, 앞의 책, 454-455면.

나. 전문공안기관

전문공안기관은 국무원 공안부 외에 전문업무부문에 설치한 공안기관이다. 철도부, 교통부, 민항총국 소속의 각 공안국, 국가임업국 소속의 삼림공안국, 그리고 해관총서 소속의 밀수단속국이 전문공안기관에 속한다. 이들 전문공안기관들은 해당 소속부서와 공안부 양쪽으로부터 이중지도(雙重領導, dual leadership)를 받으면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치안업무 및 직권을 행사한다(<그림 1>). 이중지도를 받는 전문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을 공안부 인민경찰과 달리 행업경찰(行業警察)이라고도 한다.

1) 철도공안기관

철도부(鐵道部, Ministry of Railways)는 전국 철로사업을 주관하는 국무원 소속 기구이다.²⁷⁾ 2010년 10월 현재 철도부 내에 판공청, 운수국 등 18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공안국(公安局, 公安部10局, Public Security Bureau)이 철도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철도부 공안국의 중요한 업무는 철로치안사업의 관리, 전문수송·특별수송에 대한 안전경호관리, 종합적 안전관리·화재예방사업의 지도 등이다. 철도공안기관은 행정상 철도부와 공안부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으나, 업무상으로는 주로 공안부의 지도를 받는다.

2) 교통공안기관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Ministry of Communications)는 중국내 도로와 수로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철도부와 같이 국가의 사

27) 2007년 6월, 2010년 10월 현재 철도부 부장은 리우즈권(劉志軍)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안국장은 不明. 中國鐵道部, "鐵道部機關各部門", <http://www.china-mor.gov.cn/zzjg/tdbsj.html>(2007. 7. 10, 2010. 10. 10 검색)

회간접자본(SOC)의 관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이다.²⁸⁾ 이러한 교통운수부 내에는 철도부와 같은公安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부서는 교통운수부公安국이다. 교통부公安국의 담당 업무는 주로 수로교통과 관련된 항구 및 항운公安사업을 관리 지도하는 것이다. 교통운수부公安국은 교통운수부와公安부의 지도를 함께 받으나, 철도公安기관과 같이 업무상으로는公安부의 지도를 받는다.

교통운수부公安국의 조직은 1개 실 및 2-4처까지 4개 부서로 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판공실: 행정사무관리,公安법제업무, 항구·항운 경비업무지도, 통신네트워크건설과 정보관리.

■ 2처: 안전보위사업, 항구·항운 소방관리사업.

■ 3처: 교통항운 관련 정치·사회정보의 수집과 국가안전위해사건 수사의 지도, 형사범죄 동향분석과 대책수립, 대형 형사사건 및 폭력범죄사건 수사의 협조와 지도.

■ 4처: 교통公安기관의 홍보, 인민경찰에 대한 인사·기율·감찰업무.

3) 민항공안기관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전국의 민항 업무를 책임지는 국무원 직속의 부급(部級) 기구이다.²⁹⁾ 2010년 10월 현

28) 교통운수부는 과거 교통부(交通部)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제9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통과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the State Council Reorganization Scheme)에 따라 1998년 3월 국무원 산하기관을 40개에서 29개로 축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부와 교통부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관련된 부서는 모두 존속시켰다. 2007년 6월 당시 교통부 부장은 리성린(李盛霖), 교통부公安국장은 장위성(張玉勝)이었으며, 2010년 10월 현재 교통운수부장 역시 리성린이 재임하고 있다. 中國交通運輸部, <http://www.moc.gov.cn>(2010. 10. 10 검색).

29) 민용항공국은 과거 민용항공총국(民用航空總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Civil Aviation)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고 2007년 6월 현재 산하에 화북, 동북, 화동, 중남, 서남, 서북, 신강의 7개 지구관리국(regional administrations)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민항총국장은 2003년 5월부터 재임한 양위안위안(楊元元), 민항총국公安국장은 양청평(楊成峰)이었다. 2010년 10월 현재 민용항공국장은 리지아시양(李家祥), 민용항공국내의公安국장은 송성리(宋勝利)이다. 中國民用航空局, “公安局”, http://www.caac.gov.cn/G1/G4/200612/t20061218_823.html(2010. 10. 10 검색).

재 민용항공국은 철도부, 교통부와 같이 내부에 공안담당 부서로 공안국을 두고 있다. 민항총국 공안국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민항의 안전관리제도와 규정의 제정, 공항안전관리, 공중납치·공중폭발 등 중대 불법사건의 방비와 처리, 민항공안대원의 관리와 특별기경비, 공항안전검사·치안·교통관리·소방구조업무의 관리와 지도 등이다. 민항총국 공안국의 업무수행 역시 민항총국 보다 공안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다.

4) 임업공안기관

국가임업국(國家林業局,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은 전국의 임업사업을 주관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이다. 국가임업국내에는 판공청, 삼림자원관리사(森林資源管理司), 야생보호관리사(野生動植物保護與自然保護區管理司), 삼림공안국을 비롯한 11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³⁰⁾, 그 중에 삼림공안국(森林公安局, Department of Forest Police)이 전국 삼림화재예방과 삼림공안사업, 방충검역사업 등을 지도하는 국가임업국의 임업공안기관이다. 삼림공안국 아래에는 다시 종합처(綜合處), 예방처(預防處), 구호처(撲救處), 정치처(政治處), 감찰처(督察處), 치안처(治安處), 수사처(偵查處) 등 7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삼림공안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³¹⁾

- 전국산림화재정보의 파악 및 화재진압활동의 지도
- 무장산림경찰부대 및 전문산림화재진압부대와의 협조
- 국가산림화재예방지휘부의 업무대행
- 산림공안사업지도 및 조직관리
- 중대산림사건에 대한 조사

30) 2010년 10월 현재 국가임업국장은 지아즈방(賈治邦)이 맡고 있다. 國家林業局, “机构簡介”, [http://www.forestry.gov.cn/portal/main/xxgk/jgjj.html#\(2010. 10. 10 검색\)](http://www.forestry.gov.cn/portal/main/xxgk/jgjj.html#(2010. 10. 10 검색)).

31) 國家林業局, “司局設置”, [http://www.forestry.gov.cn/portal/main/s/21/content-6.html\(2010. 10. 10 검색\)](http://www.forestry.gov.cn/portal/main/s/21/content-6.html(2010. 10. 10 검색)).

■ 산림지구의 치안활동지도

5) 해관공안기관

중국해관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감독기구로서 수직적인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³²⁾ 해관총서(海關總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는 이러한 관리체제의 최고 정점에서 중국 전체 해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영도하는 국무원 산하의 부급(部級) 직속기구이다.

수직적인 관리체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중국해관도 인민경찰의 경함(警銜)제도와 같은 관함제도(關銜制度, Customs rank regime)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³³⁾ 관함제도는 인민해방군의 군함(軍銜), 인민경찰의 경함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계급제로서, 중국해관의 계급체계는 인민경찰과 동일한 5등 13급(5 levels and 13 classes)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해관총서 내에는 밀수단속을 담당하는 해관공안기관으로서 밀수단속국(緝私局)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등 유관법률과 법규에 따라 운송수단·화물·물품의 통관, 관세징수, 밀수차단, 해관통계작성 등의 4개 기본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이 임무들 중 밀수단속국이 밀수차단의 임무와 공안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2) 중국해관조직은 3개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 제1층차는 해관총서 ; 제2층차는 광둥분서(廣東分署), 티엔진(天津)·상하이(上海)의 2개 특과원관사처, 41개 직속해관과 2개 해관학교 ; 제3층차는 각 직속해관 관할의 600개 예속해관이다. 이외에 EU와 러시아, 미국등에 해외주재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해관인원은 2010년 현재 밀수단속경찰을 포함하여 약 50,000명이다. 中國海關總署, “總署概況”, <http://www.customs.gov.cn/default.aspx?tabid=3383>(2010. 10. 10 검색).

33) 중국 관함제도는 2003년 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통과된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銜條例》, 군함제도는 1988년 7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中國人民解放軍軍官軍銜條例》에 각각 기초하고 있다.

34) 중국해관의 계급체계에서. 1등급은 해관총감, 해관부총감 ; 2등급은 관무감독(1급, 2급, 3급) ; 3등급은 관무독찰(1급, 2급, 3급) ; 4등급은 관무독관(1급, 2급, 3급) ; 5등급은 관무원(1급, 2급)이다. 현 해관총서 서장은 해관총감 성광주(盛光祖)이다. 中國海關總署, “總署概況”.

다. 지방공안기관

1) 성공안청 · 자치구공안청 · 직할시공안국

현행 중국헌법 제30조에 의하면 중국의 행정구역은 크게 1급 행정구(성, 자치구, 직할시), 2급 행정구(자치주, 현, 자치현, 시), 3급 행정구(향, 민족향, 진)으로 나누어지는 바³⁵⁾, 중국의 1급 행정구인 22개 성, 5개 민족자치구, 4개 직할시에 각각 성공안청 · 자치구공안청 · 직할시공안국이 설치되어 있다. 성공안청 · 자치구공안청 · 직할시공안국은 각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직능부문으로서 지역 전체 공안업무를 지휘 · 관리한다.

2) 공안국

공안국은 2급 행정구인 시와 현에 설치된 공안국으로 시공안국, 현공안국 등이 있다. 먼저 시공안국은 지구급의 시(地級市)³⁶⁾에 설치된 공안기관이다. 지구급의 시 외에 각 지구와 자치주, 내몽고의 맹(盟) 등 지구급 행정단위에도 시공안국과 같은 공안국(처)이 설치되어 있다. 각 공안국(처)은 해당 지구의 당위원회 · 인민정부와 상급 성 · 자치구공안청의 이중지도 하에 공안업무와 직권을 행사하며, 관할 현 · 시 공안기관과 인민경찰부대의 업무를 지도한다.

시공안국 외에 현공안국은 현 인민정부에 설치된 공안기관이다. 현 외에 현급의 시(縣級市), 내몽고의 기(旗) 등 행정단위에도 현공안국과 같은 현급 공안국이 설치되어 있다. 현공안국 역시 해당 지역 당위원회 · 인민정부와 상급 공안기관의 지도 아래 관할 내의 공안업무를 조직하고 관리한다.

35) 中華人民共和國憲法, 第三十條, “中華人民共和國的行政區域划分如下: (一) 全國分爲省、自治區、直轄市; (二) 省、自治區分爲自治州、縣、自治縣、市; (三) 縣、自治縣分爲鄉、民族鄉、鎮”.

36) 중국 행정구역에서 시는 그 크기에 따라 ① 직할시, ② 비교적 많은 구와 현을 관할하는 지급시(地級市), ③ 현에 해당하는 현급시(縣級市) 3가지가 있다.

3) 공안분국

중국의 4개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그 행정구역을 다시 구(區)와 현(縣)으로 나눈다. 이러한 직할시의 각 구, 성관할 아래 큰 시의 각 구에 설치된 것이 공안분국이다. 공안분국은 시공안국의 파견기구로서 상급인 시공안국의 직접 지도 아래 관할 내의 공안업무를 담당한다.

4) 공안파출소

공안파출소는 구(區) 공안분국, 현·현급시·기(旗) 공안국 아래에 설치한 공안기관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 지역의 가도(街道), 현 소속의 진(鎮), 향(鄉)에 설치된다. 공안파출소는 중국공안기관의 기초단위로서 현(구, 시, 기)공안국의 직접 지도 아래 관할지역내 치안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중국 4개 직할시 중의 하나인 상해시의 경우 직할시공안국 아래 행정구획에 따라 2007년 현재 18개 공안분국, 1개 현공안국을 두고 있으며 다시 그 아래 372개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다³⁷⁾. 장쑤성(江蘇省)의 경우에는 성공안청 아래에 13개 지급시 공안국과 2,011개에 달하는 공안파출소를 두고 있다.³⁸⁾

라. 인민무장경찰부대

1) 개요

인민무장경찰부대(People's Armed Police Force, PAPF)는 인민경찰법

37) 上海市公安局, <http://www.police.sh.cn>(2007. 7. 10 검색).

38) 江蘇省公安廳, <http://www.js.ga.gov.cn>(2007. 7. 10 검색). 江蘇省 공안파출소 통계는 2004년말 기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인민경찰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PAPF는 동법 부칙 제51조에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가가 부여한 안전과 보위임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³⁹⁾公安부분의 한 조직체계에 포괄되고 있다.

또 PAPF는 중국 무장역량의 한 구성부분이 되어 국무원편제에 속해 있으면서도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의 이중지도를 받는다. 즉 PAPF의 조직편제, 간부관리, 훈련, 정치사업 등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公安임무 및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公安부의 지휘를 받는다. 2006년말 현재 PAPF의 총 인원은 66만 명이다.⁴⁰⁾

2) 조직

■ 부대 구성: PAPF는 주로 내위부대(內衛部隊)와 경종부대(警種部隊)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변경공안과 소방, 경호부대 등도 PAPF에 속한다.

■ 무경총부: 무경총부(武警總部, PAPF General Headquarters)는 PAPF를 지도·관리하는 최고 지휘기관이다. 사령관격인 사령원(司令員) 1명, 제1정치위원 1명, 정치위원 1명, 부사령원·부정치위원 약간명을 둔다. 이중에서 제1정치위원은公安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무경총부는 산하에 사령부·정치부·후근부를 설치하고 내위부대와 경종부대, 기타 PAPF에 속한 부대들을 지도한다. 무경총부는公安부의 지휘를 받으며 무경총부 아래 급의 부대는 그에 상응하는 동급公安부분의 지도를 받는다.

■ 내위부대: 성(자치구, 직할시) 무경총대와 무장경찰사(武裝警察師)로 구성된다. 각급 행정구역에서 성급에는 무경총대(武警總隊), 지구급

39) 人民警察法, 第51條, “中國人民武裝警察部隊執行國家賦予的安全保衛任務”.

40) 中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五、人民武裝警察部隊”, 2006年中國的國防(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6), 2006. 12. 29. http://www.gov.cn/zw/gk/2006-12/29/content_486759.htm(2010. 10. 10 검색).

에는 무경지대(武警支隊), 현급에는 무경중대(武警中隊)를 설치하고 있다. 무장경찰사 아래는 단(團, regiments)·영(營, battalions)·련(連, companies) 등 각급 전투경찰대를 두고 일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 배치하고 있다.

■ 경종부대: 전문부대로서 황금부대(黃金部隊, gold mine force), 삼림부대(森林部隊, forest force), 수전부대(水電部隊, water and electricity force), 교통부대(交通部隊, communications force)가 포함된다. 이 부대들은 각각 금광개발, 산림화재진압, 수자원·전력공급, 고속도로건설 등을 담당하며 자체의 독립적인 지휘부를 갖고 있다.

■ 교육기관: 무경총부 아래는 직속 교육기관이 있고, 총대와 경종부대 지휘부 아래는 초급지휘관학교를 두고 있다.

3) 주요 임무와 활동 현황

PAPF는 ① 국가안전의 보위, ② 사회안정의 유지, ③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인민생활의 확보 등을 그 기본 임무로 갖고 있다. 전시의 경우 PAPF는 인민해방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경비임무 수행, 긴급사건 처리, 테러 대응, 국가경제건설사업 참여·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PAPF는 매년 100건 이상에 달하는 잠재 공격대상물 경비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부 유관부문과 협조 하에 중요 국제회의와 대형행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오고 있다.

또한 PAPF 대테러부대는 국가의 대테러방침과 원칙에 쉼 없이 하 면서 각종 폭발물과 인질납치사건 해결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사회치안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 공안기관과 협조 하에 범죄수배자 체포, 범죄조직 소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 가속화에 발맞추어 PAPF의 전문부대가 수행하는 경제건설사업 참여와 지원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황금부대는 전국 10여개 성과 자치구에서 38개의 지질탐사프로젝트를 완수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광산자원을 확보하게 하였다. 삼림부대는 최근 2년간 552회에 달하는 삼림, 초원지역 화재를 진압하여 국가자연자원 보호에 공헌하고 있다. 수전부대는 남수북조(南水北調, South-North Water Diversion Project) 등 수로사업, 대형수력발전소건설 등 21개 국가중점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교통부대는 국가 주요고속도로, 초장 터널·교량건설공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PAPF의 재난구조활동을 보면 PAPF는 최근 2년 동안 연인원 22만 4천여 명이 출동하여 2,320여차의 긴급구조에 참여하였으며, 재난지역으로부터 25만여 명의 이재민을 구조하는 성과를 보였다.⁴¹⁾

마. 기타 공안관련 기관

넓은 의미의 공안관련 조직에는 국무원 소속의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 Ministry of State Security)와 사법부(司法部, Ministry of Justice) 등이 포함된다.⁴²⁾ 중국은 1983년 공안체계 대개혁 당시 국가의 안전확보와 대간첩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부를 창설하고 공안기관의 대외정보와 대간첩업무를 국가안전부로 이관시켰으며, 공안기관의 노동교화·노동교양 관리사업을 사법부로 분리시킨바 있다. 그에 따라 국가안전부와 사법부의 관련부서에는 인민경찰이 소속되어 공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감옥관리국(監獄管理局, Bureau of Prison Administration)에 소속된 감옥인민경찰과 노동교양관리국(勞動教養管理局, Bureau of Re-education-through-labor Administration)에 소속된 인

41) 中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五、人民武裝警察部隊”, 2006年中國的國防(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6) 참조.

42) 국가안전부는 부장이었던 쉬용위에(許永躍)의 뒤를 이어 국가안전부 부부장이었던 경후이창(耿惠昌)이 2007년 8월 30일 전인대 29차 상무위에서 새로 국가안전부장으로 임명되어 2010년 10월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우아이잉(吳愛英)이 200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법부장을 맡고 있다. 中國中央人民政府, “國務院組成部門”, http://www.gov.cn/gjg/2005-06/21/content_7969.htm (2010. 10. 10 검색); 연합뉴스, 2007. 8. 30

민경찰들이 그러하다.

IV. 개혁·개방기 보안서비스와 제도의 발전

1. 보안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 개혁·개방과 보안서비스 산업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그에 수반하여 시큐리티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국가 공안조직과는 별도로, 점증하는 시큐리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4년 경제특구 중의 하나인 선전(深圳)의 서커우(蛇口)에 중국 최초의 보안서비스회사가 설립되었다.⁴³⁾

개혁개방의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보안서비스⁴⁴⁾ 산업은 지속적 발전을 거듭하여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3차 산업의 새로운 구성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5년 9월 현재 중국 공안기관이 설립한 보안서비스회사가 총 2,169개, 종사자는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⁵⁾ 공안기관이 직접 설립한 보안회사 이외에 공안기관 감독 하에 있는 부동산관리업체의 보안과 상업시설의 보안, 기타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안 부문 종사자 등이 300만명으

43) 1984년 12월 18일 선전시 공안국 서커우분국(深圳市公安局蛇口分局)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의 첫 경비업체인 서커우보안서비스공사(蛇口保安服務公司)는, 현재까지 선전시공안국 남산분국(深圳市公安局南山分局)의 영도 하에 전인소유제 기업(全民所有制企業)으로 운영되고 있다. 蛇口保安服務公司, “公司簡介 company profile”, <http://www.skbaoan.com/channels/about/4.shtml>(2010. 10. 10 검색).

44) 중국의 보안서비스(保安服務)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公安서비스와 달리 기업 중심으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 공안부가 2006년 1월 5일 반포한 보안서비스 운영규정 및 품질통제(保安服務操作規程與質量控制)에서도 보안서비스를 security service라고 번역하고 보안서비스의 개념을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안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률, 법규, 규칙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조직이 전문화된 안전경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안서비스는 소유와 규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혹은 서구의 private security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즉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로서 사적 자본 보다는 국유회사가 시큐리티산업의 핵심부분이 되며 또한 공안기관의 보안서비스회사에 대한 통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45) 人民日報, 2006. 12. 7.

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하면 보안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 전체 총 종사자는 400만명에 이른다.

경제발전 수준과 시큐리티 수요가 비교적 높은 지역인 광둥(廣東),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 상하이(上海), 산둥(山東), 장쑤(江蘇) 등 10개 성 및 직할시의 보안서비스회사 종사자수는 4만명을 넘고 있으며, 특히 광둥성과 베이징시의 전문보안원 수는 각각 13만 5천명, 7만 6천명에 달하여 해당 지역의 인민경찰 인원수를 훨씬 넘고 있다. 예컨대 북경의 경우 인민경찰은 5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보안원은 이미 7만 6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⁶⁾

2005년 말까지 중국의 성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비준하여 설립한 보안서비스회사는 2,258개, 종사자는 103만명으로 더욱 증가하였고, 그 중 4만명이 넘는 종사자수를 가진 성과 직할시의 수는 광둥과 장쑤를 비롯하여 쓰촨(四川) 등 12개로 늘어났으며 특히 광둥성, 랴오닝성, 베이징시의 전문보안원 수는 각각 14만 1천명, 11만명, 1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나아가 2006년 상반기까지 보안서비스업 종사자수는 110만명에 달하여 2005년에 비해 다시 10%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보안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⁴⁷⁾

서비스의 내용 측면에서도 중국 보안서비스 산업은 초기 인력경비에서부터 시작하여 호송, 순찰, 기계경비, 안전자문 등의 분야로 발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안업체들은 기업화된 경영을 심화함으로써 보안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현저히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경영 성과도 매년 증가시켜나가고 있다.⁴⁸⁾

46) 中國中央人民政府, “公安部通報我國保安工作及手机違法短信治理情況”, 2005. 12. 6(중국 공안부 치안관리국 부국장 마웨이(馬維亞)의 공식기자회견 발표자료)

47) 中國中央人民政府, “公安部通報‘2006年北京國際保安研討會’情況”, 2006. 8. 15(중국 공안부 치안관리국 부국장 마웨이(馬維亞)의 공식기자회견 발표자료)

48) 2004년 한 해 각 지역 보안원은 공안기관에 사건해결단서 10만건을 제공하고, 보안원이 직접 검거한 범죄혐의자도 10만 7천명에 달하여 중국 공안의 사건수사와 해결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 경영 측면에서 2004년 전국 보안서비스회사의 영업수입은 75억 위안, 이익세만도 1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북경, 광둥, 상해 대형보안서비스회사들의 연간 영업액은 5억 위안 이상, 상해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역별로 보면 최근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특히 수도 베이징의 시큐리티산업이 주목된다. 베이징시 보안회사의 효시는 1986년 4월에 설립된 북경시보안서비스총공사(北京市保安服務總公司)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당시 베이징 시정부가 비준하고, 시공안국이 직접 출자·설립하여 지도한 최초의 보안서비스회사이다. 베이징시 보안서비스 산업은 이후 국내 개혁개방과 수도 베이징의 급속한 발전 추세에 부응하면서 정부와 각계의 지원 아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06년 6월 현재 베이징시에는 11만명에 이르는 보안원이 공안기관에 등록되어 있고⁴⁹⁾ 2개의 국유보안회사와 100여개에 달하는 분야별 특종 보안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와 함께 특수를 누린 바 있는 베이징 보안서비스 산업은 경찰과 함께 올림픽안전관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이징시 공안당국에서도 보안서비스 산업을 사회 안전유지의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향후 강력하게 보안서비스 산업을 발전·육성시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⁵⁰⁾

나. 보안서비스 산업의 확장: 보안설비 및 IT 보안 시장

중국 시큐리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최근 중국 보안기업이 공급하는 상품분야는 3차 산업으로서 단순 보안서비스업에 국한되지 않고, 보안설비 및 IT 보안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즉 중국 시큐리티산업은 단순 인력경비로부터 최근 기계경비, 네트워크보안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것은 선진 보안장비와 IT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계경비를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보안설비시장과 보안시장의 주요

경우는 이미 1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中國中央人民政府, “公安部通報我國保安工作及手机違法短信治理情况”, 2005. 12. 6.

49) 中國中央人民政府, “公安部通報‘2006年北京國際保安研討會’情况”, 2006. 8. 15.

50) 인민일보(해외판 한국발행처), 2006. 9. 21. <http://www.einmin.co.kr>.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IT 보안시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보안설비시장

가) 보안설비시장의 발전

중국의 보안설비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박물관, 은행, 기업체 등 내부보위와 안전을 요하는 일부 기관이나 업체에서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보안설비산업은 1990년대 말부터 최근 10여 년 동안 수요측면에서의 다양화와 함께, 공급측면에서 해외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표 1>).

중국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인터넷 보안장비수요가 발생되기 시작했다.⁵¹⁾ 또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으로 건축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특히, 오피스 빌딩, 아파트, 호텔, 대형매장 등 고급 인텔리전트 빌딩의 건설 및 금융시설의 증가로 감시카메라를 포함하는 감시시스템 제품의 시장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⁵²⁾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안전수요의 증가와 다양화, 지속적인 건축분야의 발전, 베이징올림픽(2008년), 상하이세계박람회(2010년) 준비 등으로 중국의 보안설비시장은 2005년 이후 활황기에 진입하고 있다.⁵³⁾

중국산 제품은 최근 급속한 성장을 거치면서 저렴한 가격에 의해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 면에서는 수입브랜드와 차이가 있으며, 중국 보안설비시장은 아직까지 해외제품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⁵⁴⁾ 즉 중국산 일반 보안제품의 생산능력은 과잉된 반면

51) KOTRA, 中 인터넷 보안장치설비 시장동향, 2002. 11. 18.

52) KOTRA, 中 보안설비 시장동향, 2003. 7. 3.

53) 중국공공안전가이드(CPSG)는 2005년 69억 달러 규모였던 보안장비시장이 2009년에는 약 332억 달러로 3년간 5배 이상 급팽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매일경제, 2006. 8. 11.

54) 중국 보안설비시장에는 세계의 우수 보안설비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대표적으로 Bosch, GE, Honeywell, Panasonic, Pelco, SIEMENS, Sony, Tyco, Samsung 등 브랜드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핵심부품 및 기술, 고급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첨단기술제품 생산위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1> 중국 보안설비시장의 발전단계

모색단계(1984-1989)	고궁박물관, 천안문 등 극소수 분야에 사용
학습단계(1990-1994)	은행, 군수 등 내부보위를 중점으로 하는 분야에 사용
성장단계(1995-1998)	기업체 등 안전을 필요로 하는 업체나 기관에서 사용 시작
초기발전단계(1999-2004)	인터넷 보안장비수요 발생, 감시보안기기수요 증가 등으로 보안설비시장 다양화
고속발전단계(2005-)	건축분야의 발전과 베이징올림픽 준비 등으로 활황세이나, 시장 구조조정 필요

자료: KOTRA, 중국 보안설비시장, 2007. 3. 29.

현재 중국의 보안설비 제조업체는 1만 5000여개, 종업원은 100만명, 생산액은 연간 800억 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주강델타지역, 장강델타지역 및 京津(北京, 天津)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3대 보안산업 단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보안설비 제조업체에서는 10년간의 발전을 거치면서 감시시스템, 방재안전장비 등을 비롯한 1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감시시스템, 도난방지 및 경보시스템, 출입통제식별시스템 등 세 종류의 보안제품이 중국 설비시장의 주요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DVR와 도어락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표 2> 중국의 보안설비 주요 생산업체

DVR 주요 생산업체		
업체명	브랜드	비고
浙江大立科技有限公司	大立	중국 20여개 지역 판매와 해외 수출
上海愛普華頓電子工業有限公司	愛普華頓	제품품질에서 호평
浙江海康信息技術有限公司	hiklife	판매량에 비해 품질은 저위
浙江大華技術股份有限公司	DAHUA	전국 31개 성 및 자치구에 판매네트워크구성, 신제품 개발 능력 우수
도어락 주요 생산업체		
업체명	브랜드	비고
煙臺三環鎖業集團有限公司	tri-circle	현지 최대 규모, 수출부문은 연간 4,500만달러
中國強強集團堅士鎖業有限公司	GENSH	20여개 중국업체 연합
山東雙山電子鎖業股份有限公司	DOUBLE HILL	.
深圳威爾格電子有限公司	LS DBD	홍콩에 지사 보유
深圳市同飛達電子有限公司	Toferda	한국 STANRUN사 협력개발

자료: KOTRA, 중국 보안설비시장, 2007. 3. 29(다렌무역관 실사자료)

나) 보안설비시장의 특징

중국 보안설비시장의 특징은 첫 번째로 지역적인 면에서 동부 발전지역과 서부 저개발 지역간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지역 1급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반면, 중·서부지역은 발전된 동부지역보다 보안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시장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중국내 1급 시장 중에서도 상하이는 외국 브랜드 선호도가 강한 반면, 베이징은 외국 브랜드 선호도가 상하이에 비해 낮으며 현지 업체의 자체 연구개발이 활발한 편이다. 선전은 대외개방이 가장 빠른 도시로 해외 보안설비업체의 중국진출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저우는 시장규모가 심천에 비해 작지만 화남지역 최대 도시로 최근까지 보안설비시장에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표 3>).

<표 3> 중국 보안설비시장의 지역별 분류

분 류	지 역
1급 시장	베이징(北京), 선전(深圳),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2급 시장	톈진(天津), 우한(武漢), 청두(成都), 선양(沈陽)
3급 시장	장춘(長春), 시안(西安) 등 중등수준 도시

자료: KOTRA, 중국 보안설비시장, 2007. 3. 29.

중국 보안설비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판매유통 면에서 볼 때, 일반 개인 등이 구매자인 비전문시장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이다. 중국 보안설비 유통시장은 ① 정부기관, 교도소, 은행, 박물관 등이 구매자인 전문시장, ② 공장, 사무실, 마트, 오락실 PC방 등이 구매자인 반전문시장, ③ 일반 개인 등이 구매자인 비전문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시장에서 판매 비중은 전문시장이 25%, 반전문시장 50% 이상으로서, 아직까지 비전문시장이 성숙되지 못하고 일부 발전지역에만 그 판매가 국한되어 있다.

중국 보안설비시장의 세 번째 특징은 여타 상거래에서와 같이 거래관계에서 관시(關係, friendship)가 중요시된다는 점이다. 전문시장의 경우 보안설비의 안전성, 품질의 요구가 높으며 제품가격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기관은 가장 큰 구매자의 하나로서 관시 관념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부 보안설비시장 진입을 겨냥하는 설비업체는 정부기관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⁵⁵⁾ 중국과 같이 협조적 문화(cooperative culture)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종종 문서적인 계약보다 구두합의(oral agreement)를

55) KOTRA, 중국 보안설비시장, 2007. 3. 29.

기초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업들은 거래성립과 시장확보를 위해서 관시를 먼저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발견된다.⁵⁶⁾

2) IT 보안시장

가) IT 보안시장의 형성

중국은 1988년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중국 최초의 인터넷망인 CANET(China Academic Network)을 탄생시켰으며, 1993년에는 IHEP(the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가 미국의 Stanford 대학과 직접 연결되는 국제인터넷 링크를 설치하였다.⁵⁷⁾ 그러나 이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컴퓨터범죄의 증가와 사회혼란의 위험성이 야기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마침내 1997년부터 정보유통을 선별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방화벽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네트워크 보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반면에, 중국 IT 보안시장 발전에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IT 보안시장 규모는 네트워크 보안상의 경제적 손실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2000년에 들어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제품의 매출액은 전체 네트워크 제품의 10% 규모로 형성되었으며 방화벽, 백신소프트웨어, 종합솔루션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부분 외국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중국 업체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 참여하였다. 있다. 예컨대 2000년에 중국 백신 소프트웨어 시장에 Norton, Macfee, PC-cillin, Panda 등 세계 4대 백신 소프트웨어 업

56)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측면에서 보면 암묵적인 계약이 문서에 의한 명시적인 계약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단 관시가 형성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탐색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7) CANET는 독일의 Karlsruhe 대학에 있는 gateway를 경유하여 X.25 기술로 인터넷과 e-mail 통신이 가능한 것이었다. 김유현, “중국의 인터넷 보안정책”, *CRYPTOPIA*, 제2권 1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체가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중국의 루이싱(瑞星)과 진산(金山)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확대를 모색하였다.⁵⁸⁾

중국의 정보화 구축이 진행되면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용도 점점 더 다양해졌으며 각 분야의 네트워크보안 문제도 점점 더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사건은 기업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해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제품에 대한 투자수요도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마침내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었고 중국 각 분야에서는 네트워크보안 활용수준을 향상시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⁵⁹⁾

이처럼 중국의 IT 보안은 1990년대 말 생성되어 몇 년 만에 빠른 성장세 속에 자체적인 보안시장을 형성하였는바, 2003년경까지 중국의 IT 보안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기관별 통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우선 중국정보협회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서비스를 조사대상으로 포괄하여 진행한 조사통계에 따르면 중국 IT 보안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1998년 4억 5천만 위안에서 2000년 26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35억 위안, 2002년에는 50억 위안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IT 보안시장은 68억 위안으로 1998년에 이후 단 5년 만에 약 14배 늘어난 시장규모를 형성하였다.

또 중국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산하 시장조사기관인 CCID가 보안소프트웨어시장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4억 9천만 위엔이었던 시장규모가 2002년에는 16억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시장규모를 형

58) 이 당시 네트워크 보안제품 업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렐상(聯想), 동다아얼파이(東大阿爾派)를 대표로 하는 신홍 IT기업들이고, 둘째 그룹은 하이신(海信)과 같이 전통적인 가전제조업체가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 진출한 경우, 마지막으로 10여 개의 해외 기업들이다. 정보통신연구원, “중국 보안 솔루션 개발 현황”, *IT China Journal*, 2권 7호, 2001. 4.

59) 정보통신연구원, “2002년 중국 각 분야의 네트워크보안 활용 현황”, *IT China Journal*, 3권 8호, 2002. 8.

성하였다. 이밖에 IDC가 역시 보안소프트웨어시장을 대상으로 2000-2002년간의 시장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년 만에 2배 시장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IDC가 보안소프트웨어 외에 어플라이언스 시장을 고려, Firewall/VPN 장비시장과 IDS시장 특히 HIDS(Host-based IDS) 장비시장을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2003년도에 시장규모가 전년도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중국 IT 보안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위안, 백만 US\$

조사기관	조사대상 범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중국정보협회 정보안전위원회	Hardware, Software, Service	450	1,600	2,600	3,534	5,157	6,829
CCID	Software	-	490	760	1,230	1,636	-
IDC	Software	-	-	52	77	107	-
IDC	Software, Appliance	-	-	-	-	156	205

주: 1) 중국 조사기관인 중국정보협회와 CCID의 단위는 백만 위안, IDC는 백만 US\$.

2) IDC 조사 범위에서 Appliance는 Firewall/VPN, IDnVA(NIDS) 장비시장만 포함.

자료: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중국 네트워크 보안 시장, 2004. 1;

IDC Korea, 중국 보안시장 동향 및 전망, 2004. 4. 13.

제품종류별 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Firewall 23억 위안, Anti-Virus 2억 위안,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7억 위안 등 세 가지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방화벽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전체 제품 59억 위안 중 39%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표 5>.

<표 5> 2003년 제품별 중국 IT 보안시장 규모

단위: 백만 위안

	Firewall	Anti-Virus	IDS	VPN 암호화	PKI	기타	합계
매출액	2,300	2,000	700	220	90	590	5,900

주: 중국정보협회 2003년 추정액 중 Hardware와 Software 제품의 시장규모.
Service는 제외.

자료: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중국 네트워크 보안 시장, 2004. 1.

중국 IT 보안시장은 제품수요 업종 측면에서 볼 때 금융과 통신, 정부 기관의 구매비중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과 통신 두 업종은 그 성격상 네트워크 보안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 보안장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며, 이 두 업종이 전체 IT 보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 22%로서 IT 보안시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되고 있다. 또 중국 각급 부서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보보호 방면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바, 중국 정부기관의 IT 보안시장 구매규모는 전체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통신과 금융, 정부기관을 합한 구매비중은 2003년에 전체 시장에서 60%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IT 보안시장을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의 구매 비중이 중서부 지역에 비해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은 경제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빠르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비교적 높다. 또한 대부분 대기업들이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구매 비중은 70%로 가장 높다. 중부와 서부지역은 구매 고객이 주로 통신, 금융, 정부, 군부대, 전력 등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각 전체 시장의 20%와 10%를 차지한다.⁶⁰⁾

60)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중국 네트워크 보안 시장, 2004. 1, 27-29면.

나) IT 보안시장의 전망

기업과 정부의 IT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고, 보안의식도 강화되면서 중국의 IT 보안시장 규모는 2005년 3억 7천 8백만 달러로 2004년 대비 28.5%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미국 IDC 등은 중국의 IT 보안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⁶¹⁾ 2006년 6월 6일 북경에서 개최된 'Asia-Pacific Security and Continuity 2006' 포럼에서 IDC는 중국 보안소프트웨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2.6%로 4년 후인 2010년경에는 그 규모가 9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Firewall과 Anti-Virus 시장이 성숙하고 이 두 시장이 중국 IT 보안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IT 보안시장 제품판매구조를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향후 중국 IT 보안시장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T 보안서비스 시장의 비중은 1999년 5%, 2000년 6%, 2001년 8%, 2002년 10%, 2003년 1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⁶²⁾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제품만을 기반으로 한 시장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보안평가 등 부가서비스가 IT 보안시장의 주요 구성부분이 되고 있다. IDC도 위의 2006년 북경 포럼에서 IT 보안 개념이 단순히 방화벽시스템과 백신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을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보안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외에 보안서비스를 포함한 IT 보안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 보안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운용

61) 2005년 중국 IT 보안시장 성장률 28.5%는 같은 해 중국 전체 IT시장 성장률 11.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보안뉴스, 2006. 6. 13. <http://www.boannews.com>.

62) 중국의 IT 보안서비스는 보안기술 솔루션, 정보보호 기술통합, 응급재난복구, 보안상태 평가 등 네 가지 부문을 포함한다.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앞의 책, 26면.

가.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중국이 가속화하고 있는 개혁·개방은 보안서비스 산업 부문에서도 예외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보안서비스 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회사 설립·운영의 자율화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안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시장개방 준비의 일환으로 보안서비스에 관한 기본 제도적 장치로서 보안조례 제정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다만 중국은 보안시장을 개방하게 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상 일부 분야는 일정한 제한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국은 무기류 관리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국인들도 상응한 자격을 가진 기업 혹은 유관조직만이 이를 소지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보안서비스 회사가 중국 보안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도 무기휴대 호송서비스 등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보안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함께 업계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보안서비스회사는 오직 국가 공안기관만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공안기관의 관리와 회사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즉 공안기관은 중국 각 지역의 보안회사에 총지배인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안기관의 중앙집중식 관리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것은 공안기관의 직접적 통제로부터 기업운동을 분리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공안당국의 기본 정책방향은 공안기관이 직접 보안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오직 보안서비스 진입조건에 대한 심사비준만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회사운영권을 시장에 넘겨주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과 개인들은 당국이 정한 표준에 부합하면 모두 보안서비스 산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⁶³⁾

나. 제도의 도입과 운용

중국 보안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개혁 추진은 보안서비스 산업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보안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겨냥한 시장의 개방과 자율화 정책은 법률형식을 통해 확정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토대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보안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입된 초기 법제로는 보안서비스회사관리에 대한 규정, 보안서비스 운영과 품질에 대한 규정, 교육훈련기구에 대한 규정,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보안서비스 관련 법규정 중 우선 보안서비스 공급주체인 회사에 대한 규정으로公安부가 2000년 3월에 반포와 동시에 실시한 보안서비스회사 규범관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公安部關於保安服務公司規範管理的若干規定, 이하 관리규정)이 있다.⁶⁴⁾

관리규정에서는 보안서비스회사에 대해 “사회를 위해 유상의 전문적 안전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기업으로서,公安기관에 협조하여 사회치안을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중요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관리규정 제1호). 즉 보안서비스회사는 사회치안을 유지하는 중요 역량이지만公安기관과 달리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기업이다.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위에 대해 “보안서비스회사는公安기관의 명칭을 써서는 안 되고 독립적 법인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보안서비스회사는 독립채산과 자주경영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리규정 제3호). 또한 역으로 “公安기관은 보안서비스회사와 경제적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회사자산을 동원하거나 점용해서는

63) 中國中央人民政府, “公安部通報我國保安工作及手机違法短信治理情況”, 2005. 12. 6.

64) 관리규정은 2000년 3월 1일 반포와 동시에 실시되었다. 法律快車, “公安部關於印發《公安部關於保安服務公司規範管理的若干規定》的通知”, <http://law.lawtime.cn/d447659452753.html>(2010. 10. 10 검색).

안 된다. 나아가 회사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출해서는 안 되고, 회사에 어떠한 형식의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관리규정 제4호).

보안서비스회사의 대표인선에 대해서는, “회사법정대표의 인선은 반드시 공안기관 치안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안기관의 현직 영도 간부는 보안서비스회사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인민경찰을 파견하여 회사를 운영한다. 회사에 파견된 인민경찰은 경찰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나, 경찰복장은 착용할 수 없다. 또 보안서비스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승진 등은 여타 인민경찰과 동일하나, 급여와 복리후생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리규정 제5호). 동 규정에 의하면 회사대표는 경찰신분의 파견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보안서비스회사 관리규정에서 더 나아가 보안서비스의 구체적 운영과 서비스품질확보를 위하여 2006년 6월부터 보안서비스 운영규정 및 품질통제(保安服務操作規程與質量控制, 이하 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다.⁶⁵⁾

이 운영규정은 보안서비스 활동의 하나의 표준으로서, 구체적 운영규정과 보안서비스가 충족해야 할 기본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에서는 보안서비스에 대해, 안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전문적인 안전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총 7가지의 보안서비스를 열거하고 있다. 그 7가지 종류의 보안서비스는 출입구경비(門衛), 시설경비(守護), 순찰(巡邏), 호송(押運), 신변경호(隨身護衛), 혼잡경비(人群控制), 기계경비(技術防範), 그리고 안전자문(安全諮詢) 서비스이다.

중국 시큐리티시장의 성장에는 보안서비스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수반

65) 이 운영규정은 중국 공안부가 2006년 1월 5일 반포하고 동년 6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공안부 치안관리국이 이 운영규정 기초에 책임을 졌으며 그밖에 中國保安協會, 北京市公安局內保局, 北京市保安服務總公司가 기초작업에 참여하였다.

되어야 하며, 특히 설비산업과 IT 보안 등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선진장비와 기술에 결합될 숙련된 인적 자원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정과 시설을 갖춘 훈련기구의 양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한편으로 부실한 훈련기구의 난립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교육훈련기구의 관리와 교육훈련시장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2006년 3월 보안훈련기구관리방법(保安培訓機構管理辦法, 이하 관리방법)을 마련하였다.⁶⁶⁾ 이 관리방법에서는 보안훈련의 원칙으로 성실신용, 공정경쟁 및 규범관리, 자기부담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관리방법 제 3조) 그 내용으로 훈련기구의 설립, 학사관리, 보장금제도, 감독검사, 벌칙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인적 자원을 고급화하고 직업화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구의 정비와 함께 그에 상응한 교육훈련과정이어야 한다. 중국 공안부는 보안원 교육의 규범화와 훈련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보안원교육훈련대강(保安員培訓教學大綱, 이하 훈련대강)을 제정하고 전국 교육훈련기구와 보안서비스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적용케 하고 있다.⁶⁷⁾

훈련대강에서 보안원의 등급은 최고 A 등급의 고급보안사에서부터 가장 낮은 E 등급 초급보안원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각 등급마다 다른 표준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고급보안사의 경우 가장 적은 184시간이며 초급보안원은 가장 많은 284시간이다.

교육훈련과정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는 기초적인 이론과목과 기능훈련과목을 이수하는 단계이며 2, 3, 4단계는 각각 경비, 순찰, 호송서비스 교육에 특화된 단계이다. 5단계는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분야의

66) 관리방법은 2006년 3월 1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7개 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67) 훈련대강은 앞서 살펴 본 보안서비스운영규정 및 품질통제, 보안훈련기구관리방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공안부는 훈련대강을 2006년 12월 각 지방공안에 통지하고 이를 현지 실정에 맞추어 교육훈련기구와 보안서비스기업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中國公安部, “公安部發布《保安員培訓教學大綱(試行)》”, <http://www.mps.gov.cn/n16/n1297/n4468/n38001/n507256/511257.html> (2010. 10. 10 검색).

교육훈련 단계이며 마지막 6단계는 고급보안사(A)와 보안관리 보안사(B3)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로서 자문, 보안관리, 훈련지도를 그 교육내용으로 한다.⁶⁸⁾

중국 공안기관은 상기 보안서비스회사 관리규정, 보안서비스 운영규정, 훈련기구 관리방법, 훈련대강 등 일련의 법규정과 업무표준에 기초하여 보안서비스기업 및 시큐리티산업 전체에 대한 원활한 관리운영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기하되, 향후 시장 참여자의 탈법위험을 감소시키면서 건전한 보안서비스 시장을 육성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최근까지 중국 내에는 공안기관이 비준하고 직접 운영하는 보안기업과 공안기관이 감독하는 보안기업 이외에도 보안기업을 표방하며 불법운영되는 기업들이 있는 바, 이들 불법기업과 불법보안원들에 대해 공안기관은 국가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 및 보안원을 지도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보안요원들의 근무제복이 통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민경찰 혹은 무장경찰 제복과 유사한 경우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보안요원들이 직책을 이용하는 불법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안당국은 법규정에 기초한 보안서비스 회사와 보안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교육훈련 및 관리감독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시켜나가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중국은 2006년 베이징 국제보안세미나 준비행사 등을 통해, 상기의 산재된 보안서비스 규정 외에 보안서비스 산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보안조례의 순조로운 입법준비와 제정을 밝혀왔으나 2007년 말까지도 보안조례 제정을 공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즈음하여 2008년 2월 현재 보안서비스관리조례의 초안 즉 《保安服務管理條例(草案)》이 마련되어 제정 작업을 가시화 시켰고⁶⁹⁾ 마침내 2009년 9

68) 훈련대강의 원문은 <http://www.mps.gov.cn/n16/n1282/n3508/n2173912/n2174025.files/n1878743.doc> (2010. 10. 10 검색).

69) 中國保安協會(<http://www.csa888.cn>)의 行業新聞(2008. 2. 26) 참조.

월 28일 보안서비스관리조례(保安服務管理條例, 이하 보안조례)를 국무원 제8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를 동년 10월 13일에 공포하게 되었다.

3. 보안서비스 제도의 정비: 보안조례

가. 중국 보안조례의 구성

중국 보안조례는 국무원의 한 부문으로서公安부를 통해 그간 반포한 제 규정들과는 달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무원령 차원의 보안서비스업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보안조례는 총 9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⁷⁰⁾ 제1장 총칙(1-7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보안서비스업의 범위,公安기관의 보안서비스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보안중사단위⁷¹⁾의 관리제도수립·보안원교육훈련 의무, 보안원에 대한 법적 보호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2장은 보안서비스회사(8-12조)에 관한 규정으로 보안업체설립시 허가조건과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 자체고용단위(13-15조)⁷²⁾에 관한 규정에는 보안원자체고용단위의 법인자격요건, 업무범위의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4장 보안원(16-20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안원에 대한 자격조건, 보안원 인체생물정보 등록, 보안원의 보험가입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5장 보안서비스에 관한 규정(21-31조)에는 보안업체와 고객의 계약, 규범화된 보안서비스의 제공, 품질요건에 부합하는 기술방법제품의 사용,

70) 中國中央人民政府,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 第564号 (保安服務管理條例)”, http://www.gov.cn/zw/gk/2009-10/19/content_1443395.htm(2010. 10. 10 검색).

71) 보안서비스 기업과 자체적으로 보안원을 고용하는 단위를 통칭한다.

72) 보안원자체고용단위 (自行招用保安員的單位)는 자체적으로 보안원을 고용하여 업체내의 안전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을 말한다.

보안서비스 중 숙지한 국가기밀·영업기밀 및 고객정보 보호, 보안원 제복과 배지의 통일, 보안원의 업무와 위법활동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6장에서는 보안훈련단위(32-35조)에는 보안훈련기구의 허가 요건, 허가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제7장에서는 감독관리(36-40조)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공안기관의 보안중사단위에 대한 감독관리 의무와 권리, 국가기관과 직원의 보안서비스기업 설립금지 및 경영활동 참여 금지 등이 들어있다. 기타 제8장 법률책임(41-49조)과 제9장 부칙(50-52조)으로 구성되었다.

나. 보안조례의 주요 내용

1) 총칙

가) 목적

보안조례는 제정의 목적으로 보안서비스 업무를 규범화하고, 보안서비스 중사단위와 보안원의 관리를 강화하며, 인신·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치안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보안조례 제1조).

나) 보안서비스의 범주와 종류

보안조례는 보안서비스 업무로 우선 크게 세가지 범주를 들고 있다. (보안조례 제2조)

첫째, 보안서비스회사가 보안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에 보안원을 파견하여 출입문경비, 순찰, 시설경비, 호송, 신변경호, 안전검사 및 안전기술경비, 안전위험평가 등의 업무.

둘째,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가 보안원을 고용하여 자신의 출입문경비, 순찰, 시설경비 등 안전경비업무.

셋째, 부동산관리업체가 보안원을 고용하여 관리구역 내에서 진행하는

출입문경비, 순찰, 질서유지 등의 업무.⁷³⁾

첫째, 셋째 범주의 보안서비스는 계약경비, 두 번째 범주는 자체경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범주의 보안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7가지 종류의 보안서비스 즉 출입문경비, 순찰, 시설경비, 호송, 신변경호, 기계경비(안전검사 및 안전기술경비), 안전자문(안전위험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보안업 관리감독부문

국무원 공안부문은 전국 보안서비스 활동의 관리감독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행정구역 범위내의 보안서비스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보안서비스업협회는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법에 따른 자율활동을 전개한다(보안조례 제3조).

라) 보안종사단위

보안종사단위는 건전한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직무책임제도와 보안원 관리제도 등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요원의 관리와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보안원들의 직업윤리수준을 고취시키고, 업무자질과 책임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보안조례 제4조).

마) 보안원의 권익과 보호

보안종사단위는 보안원의 사회보험, 노동보호, 임금복리, 교육훈련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여야 하며(보안조례 제5조), 또한 공안기관은 공공재산과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예방과 제지에 공헌한

73) 두 번째와 세 번째 조항 중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부동산관리기업을 총칭하여 ‘보안원자 체고용단위(自行招用保安員的單位)’라고 한다.

보안중사단위와 보안원에 대해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보안조례 제7조).

그러나 보안조례 제6조는 “보안서비스 활동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보안원이 법에 의거하여 보안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보안조례 제6조).

2) 보안서비스회사

가) 보안서비스회사 설립

보안서비스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i) 100만원 이상의 등기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ii) 법인대표와 주요 관리자는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춰야 하며, 형사처벌, 노동교양, 수용교육과 마약 및 공직 면직 기록 등이 없어야 하며, iii) 전문기술요원은 법규상 전문자격요구 있을 시 전문기술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iv) 보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가 있어야 하며, v) 건전한 조직기구와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직무책임제도, 보안요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보안조례 제8조).

보안서비스회사 설립신청시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 및 보안조례의 제8조 조건에 부합하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수리한 공안기관은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소재지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심사의견서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조건에 부합되는 자에 대해서는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보안조례 제9조).

나) 무장경비·호송서비스회사

무장경비·호송서비스회사는 국무원 공안부문의 무장경비·호송서비스에 대한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조례 8조의 조건을 구비하고 또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i) 1000만 위안 이상의 등기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ii) 국유자본이 등기자본금 총액의 51% 이상을 점해야 하며, iii) 《전문 보안 호송요원 총기류 사용관리조례》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비호송요원이 있어야 하고, iv) 국가표준 혹은 업체표준에 부합되는 전용수송차량과 통신 및 보안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보안조례 제10조).

무장수호와 호송업무를 신청하려는 보안회사는 소재지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와 조례 제8조, 제10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서비스회사가 무장경비 및 호송업무를 추가할 경우 제8조의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를 수리한 공안기관은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소재지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심사의견서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조건에 부합되는 자에 대해서는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미 보안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허가증에는 무장경비·호송서비스를 추가한다(보안조례 제11조).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신청인은 행정관리기관에 공상등기를 하여야 하며 허가증 취득 후 6개월 이상 공상등기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증은 실효된다. 보안서비스 회사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 소재지 시급 공안기관에 본사의 보안서비스 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법정대표자, 지사책임자, 보안요원기본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보안조례 제12조).

3) 보안원자체고용단위

보안원자체고용단위는 법인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보안조례가 정한

조건을 갖춘 보안요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건전한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직무책임제도 및 보안원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락장의 경우는 《오락장관리조례》에 따라 보안서비스회사로부터 보안원을 고용해야 되며 자체적으로 보안원을 고용할 수 없다(보안조례 제13조).

보안원자체고용단위는 보안서비스 개시후 30일 내에 소재지 공안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i) 법인자격증명, ii) 법정대표자(주요 책임자), 각 분야 책임자와 보안원의 기본현황, iii) 보안서비스 구역의 기본현황, iv)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직무책임제도, 보안요원 관리제도 수립 현황 (보안조례 제14조)

보안원자체고용단위는 자체 관리 구역 이외에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보안조례 제15조).

4) 보안원

가) 보안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보안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품행이 양호하며,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중국국민이면 보안원증을 신청하여 보안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시급 공안기관의 시험과 심사에 합격하고 지문 등 인체생물정보를 등록한 후 보안원증을 발급받는다. 지문 등 생물정보관리는 국무원 공안부문의 규정에 따른다(보안조례 제16조).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안원이 될 수 없다. 즉 i) 수용교육, 격리마약치료, 노동교양 또는 3회 이상 행정구류를 받은 자, ii)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iii) 보안원증이 취소된지 3년 미만인 자, iv) 보안원증이 2회 이상 취소된 자 등이다(보안조례 제17조).

나) 고용 및 보험가입

보안중사단위는 조건에 부합되는 보안원을 고용하고, 보안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안조례 제18조) 또한 보안중사단위는 보안서비스 직무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안원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보안조례 제20조).

다) 정기적 훈련 및 시험

보안중사단위는 보안서비스 직무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원에 대해 법률, 보안전문지식과 기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보안조례 제18조). 또한 보안중사단위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보안요원이 불합격하거나 관리체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의법 처리한다(보안조례 제19조).

5) 보안서비스

가) 합법적 보안서비스 활동 및 제한

보안서비스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의 항목, 내용 및 권리의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위법한 서비스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하고 이를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보안조례 제21조).

시급이상 인민정부에서 명시한 국가안전 및 국가기밀 관련 치안보위중점단위에 대한 보안업무는 외자(外資), 중외합자(中外合資), 중외합작(中外合作)의 보안회사에 개방하지 않는다(보안조례 제22조).

나) 규범화된 보안서비스의 제공과 비밀보호

보안서비스회사는 보안서비스업 업무표준에 따라 규범화된 보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보안조례 제24조), 보안서비스 중 사용한 기계경비제품은 유관 품질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안서비스 중 설치한 모니터링 설

비는 국가 유관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모니터링설비의 사용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보안조례 제25조). 또한 보안중사단위는 보안서비스 중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기밀 및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보안조례 제26조).

다) 복식

보안원은 보안원복장과 통일된 배지를 착용한다. 복장과 배지는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 및 인민경찰, 공상세무 등 행정집행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원의 복장, 배지장식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보안조례 제27조).

라) 보안서비스 활동

보안서비스 중 직책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출입자 신분증 검사, 차량 및 물품에 대한 기록
둘째, 통제구역내의 순찰, 시설경비, 안전검사, 감시경보
셋째, 공항, 터미널, 부두 등 공공장소의 사람과 휴대물품에 대한 안전검사 및 질서유지.

넷째, 무장경비 및 호송임무 수행시 필요한 임시 경계구역을 확보. 단, 시민의 정상적 활동에 대한 장애가 최소화되어야 함(보안조례 제29조).

마) 보안원의 금지 행위

- i) 타인 인신자유의 제한, 타인 신체의 수색, 모욕 및 구타
- ii) 타인 증명서와 재물의 차압, 몰수
- iii) 공무집행 방해
- iv) 채무추심 참여, 폭력 등을 이용한 분쟁 해결

- v) 모니터링 영상자료, 경보기록의 수정 혹은 유포
- vi)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보안서비스 중 획득한 국가비밀, 영업비밀 및 고객 정보의 누설
- vii)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보안조례 제30조)

6) 보안훈련단위

가) 보안훈련단위의 요건

보안훈련단위는 i)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보안서비스회사, 또는 법인 자격을 갖춘 학교 내지 직업훈련기구로서 ii) 보안훈련에 필요한 교사역량을 갖추되, 그중 보안전문교사는 대졸이상의 학력 또는 10년 이상의 치안관리경험을 구비해야 되며, iii)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시설 등 교육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조례 제32조).

나) 허가 절차

보안훈련단위 신청자는 소재지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와 조례 제32조 조건에 부합하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수리한 공안기관은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소재지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심사의견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심사의견서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조건에 부합되는 자에 대해서는 보안훈련 허가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보안조례 제33조).

다) 총기훈련, 교육훈련요강 등

무장경비·호송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안원의 총기사용훈련은 인민경찰 학교, 인민경찰훈련기구가 책임진다. 훈련업무를 담당하는 인민경찰학교,

인민경찰훈련기구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서류를 접수한다(보안조례 제34조). 보안훈련단위는 교육훈련요강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보안전문지식과 기능훈련 및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보안요원이 받는 훈련교육요강은 국무원 공안부문이 심사하여 결정한다(보안조례 제35조).

7) 관리감독

가) 공안기관의 감독관리

공안기관은 보안중사단위가 수립한 보안서비스관리제도, 직무책임제도, 보안요원관리제도와 긴급상황대응안 등을 지도하고, 보안중사단위가 관련제도를 이행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보안중사단위, 보안훈련단위 및 보안원은 공안기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보안조례 제36조).

나) 공안기관의 정보관리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 감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중사단위, 보안훈련단위 및 보안원의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공안기관은 보안요원의 지문 등 인체생물정보의 채취 및 등록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보안조례 제37조).

다)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의 기업설립 및 경영참여 금지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은 보안서비스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보안서비스회사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에 상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보안조례 제40조).

8) 법률책임

가) 무허가 보안서비스의 처벌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보안서비스·보안훈련업을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하고,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보안조례 제41조).

나) 보안종사단위의 처벌(벌금 등)

보안종사단위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기한 내에 개정을 명하고, 경고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 i) 보안서비스회사의 법정대표인 변경이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 ii)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서류를 접수하거나 취소한 경우
- iii) 보안원자체고용단위가 관리구역 외에서 보안활동을 하는 경우
- iv) 조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보안원으로 고용한 경우
- v) 보안서비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보안활동의 합법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위법적인 서비스요구를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vi) 보안서비스회사가 조례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vii) 조례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모니터링 영상자료, 경보기록 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이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보안조례 제42조).

다) 보안종사단위의 처벌(형사처벌 등)

보안중사단위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다.

- i) 보안서비스 중 획득한 국가비밀,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를 누설한 경우
- ii) 모니터링 설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경우
- iii) 모니터링 영상자료, 경보기록의 수정 혹은 유포
- iv) 공무집행방해, 채무추심참여, 폭력 등을 이용한 분쟁해결 등을 보안원에게 교사 및 종용하는 경우
- v) 보안원에 대한 관리, 교육훈련 소홀로 인해 보안원의 위법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중대한 부정적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안조례 제43조).

라) 보안원에 대한 처벌

보안요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안기관이 지도훈계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보안원증을 취소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 i) 타인 인신자유의 제한, 타인 신체의 수색, 모욕 및 구타
- ii) 타인 증명서와 재물의 차압, 몰수
- iii) 공무집행 방해
- iv) 채무추심 참여, 폭력 등을 이용한 분쟁 해결
- v) 모니터링 영상자료, 경보기록의 수정 혹은 유포
- vi)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보안서비스 중 획득한 국가비밀, 영

업비밀 및 고객 정보의 누설

vii)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보안조례 제30조).

무장경비·호송에 종사하는 보안요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 보안 호송요원 총기류 사용관리조례(專職守護押運人員槍支使用管理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보안조례 제45조).

마) 보안훈련단위 처벌

보안훈련단위가 훈련교육요강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안훈련 명의로 사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보안조례 제47조).

바) 국가기관의 경영참여 등 처벌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이 보안서비스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를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보안조례 제48조).

사) 공안기관의 직권남용 등 처벌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이 보안서비스 활동을 감독관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도모를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보안조례 제49조).

9) 부칙

보안서비스허가증, 보안훈련허가증 및 보안원증의 양식은 국무원 공안
부문이 정한다(보안조례 제50조).

V. 결 론

중국의 시큐리티제도 중 공공부문의 치안(public policing)인 공안은 1949년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와 문화대혁명기,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와 개혁·개방 심화 단계를 거치면서 인민경찰관련 법제와公安부 조직 등 제도의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보안서비스 산업이 시큐리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점이며 이는 보안서비스 산업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WTO 가입에 따라 보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단계에 있었던 바, 중국 정부는 산재한 보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 법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2009년 보안조례를 제정의 가장 큰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안조례가 제정된 2009년은 중국이 선전의 서커우(蛇口)에 중국 최초의 보안서비스회사인 서커우보안서비스공사(蛇口保安服務公司)를 설립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중국 보안서비스산업은 지속적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별 측면에서 보면 시큐리티 수요가 높은 지역인 광둥, 베이징은 2005년에 이미 해당 지역의 경찰(公安) 수를 훨씬 넘었고, 보안서비스의 내용 측면에서도 초기 인력경비에서부터 호송, 순찰 외에 기계경비, 안전자문 등의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보안설비 및 IT 보안으로까지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이같은 발전의 결과 4반세기가 지난 현재 중국 보안서비스업 규모는 2010년 현재 보안서비스회사가 약 3,000개, 종사자는 35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⁴⁾

74) 中國保安網, <http://www.zgba.cn/html/WangZhanGongGao/20091010083907.html> (2010. 10. 10 검색).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병행하여 중국의 보안서비스는 회사와 훈련기관, 보안원 등에 관한 통일적인 법제의 부재, 법적 책임과 처벌규정의 미비, 보안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안전보장, 기업운영의 독점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바, 보안조례가 2010년 시행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보안서비스 법제가 마련됨으로써, 보안서비스업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고, 보안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안서비스 기본 법제가 마련됨으로써, 산재된 관련 규정들의 운용에서 오는 법규 중복과 충돌, 제도 공백들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보안서비스 업체, 교육훈련기관, 보안요원, 정부관리감독기관 등 보안서비스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와 책임,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탈법위험이 높았던 보안서비스 산업에 범질서가 안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넷째, 국가기관이 보안서비스회사를 설립·경영할 수 없게 하여 공안 분야에서 독점운영하던 보안서비스업에 민간자본의 진입을 허락함으로써 영업독점 타파와 경쟁촉진, 선진기술 및 우수인재 유입 등 보안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⁷⁵⁾

이상에서 보듯이 중국이 가속화하고 있는 개혁·개방은 시큐리티 부문에서도 예외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제도변화의 기본 방향은 보안서비스 시장의 점진적 자율화와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있는 공안과 보안서비스제도의 개혁, 즉 공안부문의 개혁뿐만 아니라 시장 요구를 감안한

75) 중국 보안회사는 현급시 이상의 행정지역에서 설립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운영하므로 지역적 독점과 업종적 독점을 병행하여 보안서비스 업체가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민형 외, “한·중 민간경비관련법제 비교고찰”, 치안정책연구 제23호, 2009, 47면

보안서비스 제도의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인 개혁실천은 중국 전체의 시큐리티 제도발전과 산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2003.
- 김유현, “중국의 인터넷 보안정책”, *CRYPTOPIA*, 제2권 1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 김형만 외,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7.
- 박동균 · 이재호, “중국 인민경찰의 발전과정과 조직관리”, 치안정책연구, 제17호, 2003
- 안황권 외, 비교시큐리티제도론, 도서출판 진영사, 2007.
- 이민형 외, “한·중 민간경비관련법제 비교고찰”, 치안정책연구, 제23호, 2009.
- 임반석, 중국경제, 도서출판 해남, 1999.
- 정 응, “중국 시큐리티산업의 발전과 현안과제(中國安全産業的發展和疑案課題)”, 中-韓學術交流與建立友好關係論文集, 中國延邊大學·韓國龍仁大學, 2008. 6. 27.
- 정 응, “중국의 시큐리티제도와 동향”,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제1회 시큐리티포럼, 2007. 8. 23.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년 중국 각 분야의 네트워크보안 활용 현황”, *IT China Journal*, 3권 9호, 2002. 8.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국 보안 솔루션 개발 현황”, *IT China Journal*, 2권 7호, 2001. 4.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백산출판사, 2006.
- IDC Korea, 중국 보안시장 동향 및 전망, 2004. 4. 13.
-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중국 네트워크 보안 시장, 2004. 1.
- KOTRA, 中 인터넷 보안장치설비 시장동향, 2002. 11. 18.
- KOTRA, 中 보안설비 시장동향, 2003. 7. 3.
- KOTRA, 중국 보안설비시장, 2007. 3. 29.

2. 외국문헌

North, D. C.,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中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五、人民武裝警察部隊”, 2006年中國的國防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6), 2006. 12. 29. http://www.gov.cn/zwgk/2006-12/29/content_486759.htm(2010. 10. 10 검색).

3. 신문류 및 기타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발행처, <http://www.einmin.co.kr>.

주중한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KOTRA, <http://www.kotra.or.kr>.

中國公安部, <http://www.mps.gov.cn>.

中國保安協會, <http://www.csa888.cn>.

中國保安網, <http://www.zgba.cn>.

中國中央政府門戶网站, <http://www.gov.cn>.

中國網, <http://big5.china.com.cn>.

人民網, <http://60.people.com.cn>.

維基百科, <http://zh.wikipedia.org>.

維基文庫, <http://zh.wikisource.org>.

책임연구보고서 2010-34

중국 시큐리티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